

용인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제정	2002. 5. 17	조례 제 394호
개정	2005. 10. 5	조례 제 772호
	2005. 10. 27	조례 제 778호(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)
	2007. 4. 6	조례 제 867호
	2010. 8. 2	조례 제1094호
일부개정	2012. 12. 11	조례 제1264호(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)
일부개정	2014. 10. 6	조례 제1395호
일부개정	2017. 10. 2	조례 제1713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
일부개정	2018. 1. 12	조례 제1775호
일부개정	2020. 11. 9	조례 제2079호(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식품위생법」 제89조에 따라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용인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,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5. 10. 5, 2007. 4. 6, 2010. 8. 2, 2014. 10. 6>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07. 4. 6, 2010. 8. 2, 2014. 10. 6, 2018. 1. 12>

1. “영업자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가. 「식품위생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

나.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

2. 삭제 <2018. 1. 12>

3. 삭제 <2018. 1. 12>

제3조 삭제 <2018. 1. 12>

제4조(기금의 사용) ① 용인시 식품진흥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은 법 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용인시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한 사업에 사용한다. <개정 2005.

10. 5, 2010. 8. 2, 2014. 10. 6, 2018. 1. 12〉

② 기금의 사용 시기는 기금의 조성현황 등을 고려하여 용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규칙으로 정하되 기금의 안정과 효과적인 기금의 사용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의 일부를 적립할 수 있다. 〈개정 2014. 10. 6, 2018. 1. 12〉

제5조(기금의 운용·관리)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·관리하여야 한다.

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용인시 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·관리하되, 여유자금은 「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5조제1항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05. 10. 27, 2014. 10. 6, 2018. 1. 12, 2020. 11. 9〉

③ 시장은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·보관업무와 용자업무 등을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. 〈신설 2010. 8. 2, 개정 2018. 1. 12〉

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「용인시 재무회계 규칙」을 따른다. 〈개정 2005. 10. 5, 2010. 8. 2, 2014. 10. 6〉

제6조(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〈개정 2014. 10. 6, 2018. 1. 12〉

1.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
2.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
3.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〈개정 2010. 8. 2, 2014. 10. 6〉

③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식품위생업무 담당 실·국·소장이 된다. 〈개정 2005. 10. 5, 2017. 10. 2, 2018. 1. 12〉

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. 다만,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

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 8. 2, 2014. 10. 6, 2018. 1. 12>

1. 용인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용인시의회 의원
 2.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
 3. 식품위생 관련 직능단체의 대표자
 4.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
 5. 그 밖에 관련 단체의 대표자
-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10. 6, 단서삭제 2018. 1. 12>
-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식품위생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. <개정 2005. 10. 5, 2018. 1. 12>
- [제목개정 2018. 1. 12]

제6조의2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. <개정 2018. 1. 12>

-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.
-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4. 10. 6]

제7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, 위원장은 매년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고,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회를 소집한다. <개정 2014. 10. 6, 2018. 1. 12>

-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개정 2014. 10. 6, 2018. 1. 12>

제8조 삭제 <2018. 1. 12>

제9조(회계관계공무원)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금업무 담당 부서의 장을 기금수입정수관, 기금재무관으로 하고 기금업무 담당 팀장을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한다. <개정 2005. 10. 5, 2010. 8.

2, 2014. 10. 6, 2018. 1. 12〉

② 회계관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,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4. 10. 6, 2018. 1. 12〉

[제목개정 2018. 1. 12]

제10조(용자 사업 계획) 시장은 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 개선을 위한 용자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4. 10. 6, 2018. 1. 12〉

[제목개정 2018. 1. 12]

제11조(용자 대상) 기금의 용자 대상은 용인시 관할 지역 안의 영업자로 한다.

[전문개정 2018. 1. 12]

제12조(용자 신청 등) ① 기금을 용자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8. 1. 12〉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용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용자 대상의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용자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4. 10. 6, 2018. 1. 12〉

[제목개정 2018. 1. 12]

제13조(용자한도 및 용자조건 등) 용자금의 업종별 한도액 및 용자조건, 이자율, 용자 절차 및 상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 〈개정 2014. 10. 6〉

제14조(용자금의 대여)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기금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하여 용자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. 〈개정 2018. 1. 12〉

② 제1항에 따른 대여금의 상환 및 이자의 납입방법 등 약정조건은 시장이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. 〈개정 2014. 10. 6〉

③ 제12조제2항에 따른 추천서를 접수한 금융기관은 이 조 제1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받은 대여금 중 해당 금액을 용자 대상자에게 용자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4. 10. 6, 2018. 1. 12〉

[전문개정 2005. 10. 5]

제15조(기금운용계획·결산보고) ① 시장은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<개정 2005. 10. 5, 2014. 10. 6, 2018. 1. 12>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용인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4. 10. 6, 2018. 1. 12>

제1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8. 1. 12>

부칙 <2002. 5. 17>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이미 조성되었거나 사용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·사용된 것으로 본다.

부칙 <2005. 10. 5 조례 제772호>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조성되었거나 사용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되거나 사용된 것으로 본다.

부칙 <2005. 10. 27 조례 제778호,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>

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7. 4. 6 조례 제867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0. 8. 2 조례 제1094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2. 12. 11 조례 제1264호,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3. 1. 1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제4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「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」를 인용한 조항은 「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.

별표 생략.

부칙 <2014. 10. 6 조례 제1395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7. 10. 2 조례 제1713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④ 까지 생략

⑤ 「용인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부시장”을 “제2부시장”으로 한다.

⑥ 부터 ⑧ 까지 생략

부칙 <2018. 1. 12 조례 제1775호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보궐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공무원이 아닌
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
른다.

부칙 <2020. 11. 9 조례 제2079호,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
용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 생략

제4조 생략

제5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④ 까지 생략

⑤ 용인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
다.

제5조제2항 중 “「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12조”를
“「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5조제1항”으로 하
고, “통합관리기금”을 “통합계정”으로 한다.

⑥ 부터 ⑨ 까지 생략